



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
VR Bld. 3<sup>th</sup> Floor. 16 Seocho-daero 45gil, SEOCHO-GU, SEOUL, KOREA

TEL : (02)2156-2100  
FAX : (02)2156-2110

연수원(대외) 제 2018 - 3 호 2018. 1. 23  
수 신 : 각 창업투자회사, LLC, 신기술금융회사 대표이사  
참 조 : 기획관리 담당 부서장  
제 목 : 「2018년 성공적 ‘투자’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」 개최

1.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.

2. 협회 부설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(KVCI)에서는 오는 2월 21일(수)부터 2월 27일(화)까지 5일 동안 「2018년 성공적 ‘투자’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

3. 2018년 성공적 '투자'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은 회사 제도, 주식 거래 실무 및 법률 쟁점, 회사법 상의 주주(투자자)와 회사의 소송 유형, 회생절차 등 투자자로서 실제 벤처캐피탈 업무 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본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창업투자회사, LLC 및 신기술금융회사 제위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회 홈페이지 ([www.kvca.or.kr](http://www.kvca.or.kr)) 접속 후 팝업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교육명 : 2018년 성공적 '투자'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
  - 교육기간 : 2018년 2월 21일(수) ~ 27일(화) / 5일 출석
  - 장소 : 21일(수) ~ 23일(금) 서초동 월현빌딩 B1 희망실1  
26일(월) ~ 27일(화)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
  - 대상자 : 창투사, LLC, 신기술금융사, 기타 일반 등
  - 참가요건 : 총 9개 강의 중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적으로 이수 가능  
(최소 5개 이상 선택 필수)

○ 교육비

No	시간	강의명	금액(만 원)	
			회원사/LP 등*	비회원사/일반
1	3	회사제도 일반	9	12
2	3	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등기 실무 사례	9	12
3	3	회사법상의 주주(투자자)와 회사의 소송 유형	9	12
4	5	주식 거래 실무 및 법률적 쟁점	15	20
5	5	주식회사와 기관	15	20
6	4	주식회사와 자금조달(자본금 변동, 사채발행)	12	16
7	2	자본금의 감소 및 회계	6	8
8	3	합병,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에 대한 이해	9	12
9	3	회생절차와 투자자의 조치	9	12
전 강의 신청 시 총 금액			93	124

\*LP 등 : 협회 회원사의 주주 및 펀드출자자

- 모집기간 : 2018년 1월 23일(화) ~ 2월 7일(수), 선착순 마감(50명)
- 신청방법 :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vca.or.kr>) 접속 후 팝업창에서 교육 신청 또는 협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'교육 신청'을 클릭 → 교육 신청서 다운로드·작성 → E-mail 제출 (온라인 및 팩스 신청 불가)
  - 이은정 연구원 [valene@kvca.or.kr](mailto:valene@kvca.or.kr) / 이신재 연구원 [lsj@kvca.or.kr](mailto:lsj@kvca.or.kr)
  - 신청서 제출 후 협회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- 교육비 입금 : 2017년 2월 7일(수)까지 선택한 과목(5개 이상 필수) 총 금액
  - 신한은행 100-026-893204 / 예금주 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※ 개강 당일 불참 시에는 교육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.  
2월 13일(화)까지 별첨의 환불신청서 제출 시에만 가능합니다.
- 문의
  - 정지영 부장, 이은정 연구원, 이신재 연구원  
(Tel.02-2156-2113/2106)

※ 전 과목 이수 시에만 수료증 발급  
(특별한 사유 없이 1강좌 이상 강의 불참 시 교육과정 수료 불가)

※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상기 과정은 전 과목을 이수하신 분(수료증 발급 대상자)에 한하여 다음 교육 신청 시 마일리지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【교육 마일리지제도】

- 2018년 교육 참여 횟수가 개인 별로 2회 이상일 경우, 2회 차 교육에 한하여 개인 별 해당 과정의 교육비 30% 추가 할인.  
할인혜택은 개인 별로 적용 되며(기관별 적용 불가), 연 1회에 한함.
  - 할인혜택 제외 과정 :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 교육  
벤처캐피탈리스트 대학(원)생 단기체험 과정  
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- 필수과정



첨 부 : 2018년 성공적 '투자'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 일정 1부. 끝.

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  
**벤처캐피탈연수원장**

---

---

## 2018년 성공적 '투자'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

---

□ 운영형태 : 총 5일 출석(총 9개 강의 중 5개 이상 선택 필수)

일자	장소
2/21(수)~23(금)	서초동 월현빌딩 B1 희망실1
2/26(월)~27(화)	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

구분	강의/내용	강사
2월 21일 (수) 제1일차	09:30~10:00 Registration 및 인사말	정지영 부장 (한국벤처캐피탈협회)
	제1강. 회사제도 일반	
	10:00~12:00 (2') ① 회사의 종류 가.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. 상법상의 조직 다. 펀드의 법적 성격 및 구조	이종건 대표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	12:00~13:00 Lunch(개별)	
	13:00~14:00 (1') ② 주식회사 설립의 일반론 가. 회사 제도 일반: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원리 나. 설립: 설립절차 개관, 정관의 작성,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, 설립등기, 가장납입, 설립 에 관한 책임 및 설립무효	~계속
	14:00~14:15 Coffee Break	
	제2강.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등기 실무 사례	
	14:15~17:15 (3') ① 등기의 종류와 효력 ② 회사법 상의 등기 제도 / 투자와 등기 가. 법인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나. 등기부등본이 주는 정보와 LDD 방법 ③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기실무 사 례 및 선례 가. RCPS, CB, BW, STOCK OPTION, 임원, 자본금, 대표권 제한, 주식양도 제한 등의 등기사항 보는 방법 및 법률적 의미 나. 등기사례(법무사)	염춘필 법무사 (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) 이종건 대표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
구분	강의/내용	강사
	<b>제3강. 회사법상의 주주(투자자)와 회사의 소송 유형</b>	
2월 22일 (목) 제2일차	<p>① 회사법상 소송의 유형</p> <p>② 주주(투자자)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과 법적 쟁점</p> <p>가. 주식에 관한 법적 분쟁</p> <p>나. 주주총회, 이사회 관련 법적 분쟁</p> <p>다. 이사 등 임원의 직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</p> <p>라.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·등사 거래분</p> <p>마. 투자자(소수주주)가 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사례</p>	이종건 대표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12:30~13:30	Lunch(개별)	
<b>제4강. 주식 거래 실무 및 법률적 쟁점</b>		
13:30~18:30 (5')	<p>① 주식</p> <p>가. 주식의 개념</p> <p>나. 주식과 자본금(액면/무액면)</p> <p>다. 종류주식: 개관,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,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, 상환주식, 전환주식</p> <p>② 주주와 주주권 및 주주명부</p> <p>가. 주주의 권리</p> <p>나. 주주평등의 원칙</p> <p>다. 주주의 의무</p> <p>라.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쟁점</p> <p>마. 주권: 주권 미발행 법률관계, 주권의 효력발생 시기, 주권의 불소지제도, 주권의 실효, 주식의 전자등록</p> <p>바. 주주명부: 기재사항, 주주명부의 효력,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, 전자주주명부, 실질주주명부</p> <p>③ 주주의 지위 변경; 주주권의 변동</p> <p>가. 주식의 양도: 주식의 양도 방법, 명의개서(주식양도의 대항요건), 주권의 선의취득</p> <p>나.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</p> <p>다.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</p> <p>라.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: 권리주 양도 제한,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, 자기주식 취득 제한, 상호주 소유의 규제, 특별법상의 주식거래 제한</p>	류권영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
구분	강의/내용		강사
	제4강. ~계속		
2월 22일 (목) 제2일차	13:30~18:30 (5')	마. 주식의 담보.대차 바. 주식의 소각.분할.병합 <b>④ 자본시장</b> 가. 시장의 구분 및 특례규정 나.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 - 예탁결제와 실질주주; 예탁의 법률관계, 보호 예수 사례 등 - 내부자거래의 제한: 비상장회사에 적용 가능성 포함 다. 경영권 분쟁	류권영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	제5강. 주식회사와 기관		
2월 23일 (금) 제3일차	13:00~18:00 (5')	① 기관(주주총회, 이사회, 이사, 감사)에 관한 제도 일반 ② 주주총회: 주주총회 권한, 회의의 소집, 의사진행, 결의,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, 주주총회결의의 하자, 종류주주총회 ③ 이사, 이사회, 대표이사; 이사, 이사회, 대표이사, 소규모회사, 이사의 의무,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 방지; 경업금지, 회사기회 유용의 금지, 이사 등의 자기거래, 이사의 책임;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,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,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, 유지청구권, 대표 소송,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, 집행임원 ④ 감사	이종건 대표변호사 권낙현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
구분	강의/내용	강사
<b>제6강. 주식회사와 자금조달(자본금 변동, 사채발행)</b>		
10:00~12:00 (2')	<p><b>① 신주의 발행</b></p> <p>가. 의의 및 절차 나. 효력 다.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라.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분쟁</p>	백은성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12:00~13:00	Lunch(개별)	
13:00~15:00 (2')	<p><b>② 사채의 발행</b></p> <p>가. 의의 및 절차 나. 특수사채: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기타 특수사채(교환사채 외)</p>	~계속
15:00~15:15	Coffee Break	
<b>제7강. 자본금의 감소 및 회계</b>		
15:15~17:15 (2')	<p><b>① 자본금의 감소(감자)</b></p> <p>가. 감자의 구분 나. 감자의 방법 다. 감자의 절차 라. 감자의 효과 등</p> <p><b>② 회사의 회계</b></p> <p>가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나. 준비금 다. 이익배당 라. 공시</p>	권낙현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
구분	강의/내용	강사
	<b>제8강. 합병,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에 대한 이해</b>	
09:30~12:30 (3')	① 회사의 조직개편 가. 합병 나. 회사분할 다.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표괄적 이전 라. 주식의 강제매도.매수청구 ② 회사의 해산과 청산	이종건 대표변호사 백은성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12:30~14:00	Lunch(개별)	
<b>제9강. 회생절차와 투자자의 조치</b>		
2월 27일 (화) 제5일차	① 회생절차 개관 가. 회생절차의 개요 및 흐름 나.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다.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개시효과 라. 회생절차의 기관 마. 채무자 재산의 확보 바.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, 주주, 지분권 등 사.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아. 조사위원의 조사 및 관계인집회 자. 회생계획안 ② 회생절차와 투자자의 법적 조치 가. 절차의 단계별 투자자가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 나. 회생절차와 사전조치 다. 회생절차와 사후조치 라. 각 단계별 법적 조치의 불변기간 등 ③ 기타 투자자가 알아야 할 특별법 관련 내용 발췌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나. 민사소송법 다. 형법,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.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	권낙현 변호사 (법무법인 이후)

※ 상기 일정은 향후 부분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강의별로 다뤄질 사례는 **별첨 자료**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[별 첨]

### 성공적 ‘투자’를 위한 회사법 등 법률 실무과정 강의별 사례 세부내용

#### 제1강. 회사제도 일반

- 회사형 펀드, 조합형 펀드, 신탁형 펀드란?
- 조합형 펀드, PEF 관련 최근 쟁점 판례(당사자능력, 지분 담보, 출자자산 담보 등)
- 정관이란 무엇인가? 정관이 투자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는가?
- 투자 전, 투자 후 반드시 정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?
- RCPS, CB, BW 투자계약서 중 정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?
- 비상장회사의 일반적 정관의 내용은 무엇이며, 투자를 할 경우 정관에 어떠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가?
- 정관과 투자계약서의 불일치와 그 효력에 관한 사례 및 판례
- 투자 전 LDD에서 Check 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?

#### 제2강.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등기 실무 사례

- 전환사채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RCPS 투자를 했는데, 회사가 보통주 등기를 했습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투자자 주식만 감자를 유상으로 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? 보통주와 RCPS 주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해서 회수하고 싶은데,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등기까지 될 수 있나요?
- 교환사채로 투자도 이제 된다는데 이건 등기가 안 되는 건가요?
-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(WARRANT) 관계가 이상하네요. 요즘 SAFE, CN도 투자 한다는데 차이가 뭐죠?
- 법정준비금으로 무상증자를 해서 등기 할 수 있을까요?

#### 제3강. 회사법상의 주주(투자자)와 회사의 소송 유형

- 회사가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대요. 저희는 동의하기 싫은데, 그래도한다고 하네요. 이거 저희가 막을 수 있나요?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CB 발행했어요. 이거 어떻게 막죠? 알아보니 이미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전환을 하여 지분율이 희석되었습니다. 얹을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임원을 선(해)임하여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열어주지 않아요. 이거 주총 못하는 건가요?
- 자기들끼리 주총 소집통지도 안하고 주총을 하려고 하네요. 저희에게 매우 불리한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하나요?

- 주주제안권 행사를 하였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. 안건 상정도 해주지 않고 있고요.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?
- 주주총회를 사실상 회사의 일부 주주만이 불법적으로 강행을 하여 임원을 변경을 하고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. 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총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을까요?
- 투자를 했는데 회사 임원이 배임행위를 했네요. 당장 회사 업무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
- 회사가 분식회계(위법행위)를 했습니다.(하려고 합니다.) 저희가 당장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?

#### 제4강. 주식 거래 실무 및 법률적 쟁점

-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액면가가 없어요. 무액면 주식회사라 한다고 합니다. 이게 뭔가요? 저희는 액면주식회사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?
-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에 이해관계인 외 제3자가 이사 선임 관련하여 의결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주식이 가능한가요?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해야 하나요?
- 저희가 상환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현물상환을 한다고 합니다. 저희도 정 현금이 없으면 현물로라도 상환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
- 저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였는데 등기부등본에 전환조건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네요. 저희가 전환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?
- 저희(투자자)는 소수주주인데 회사가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?
- 회사의 주주를 보니 이해관계인의 특수관계인이 타인 명의로 출자를 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주식은 누구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나요? 이해관계인 주식이 자기 주식이 아니라고 하네요. 명의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납입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. 이거 누구 주식인건가요?
- 주권미발행확인서가 무엇인가요? 이렇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교부받고 주식을 거래해도 되는 것인가요?
-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자가 주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효력은 어떤가요?
-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. 돈 다 냈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인데 구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? 매수인이 주권을 줘야만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.
-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하였다고 하는데 주식 담보가 어떤 건가요? 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러한 것이 가능한가요?
- 투자를 했는데, 구주매매 하려고 하니 안 된대요. 정관에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 승인 받으라고 하네요. 팔지 말래요. 어떻게 해야 하죠?
- 회사가 투자계약서 위반을 하였습니다.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회사가 법률상 취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계약서에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건가요? 다른 방법이 뭐 없을까요?
-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인데 제가 신주로 취득한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. 이 주식을 제가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?

## 제5강. 주식회사와 기관

- 회사가 투명하지 않아 신규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주주제안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? 회사가 이 경우 부당하게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죠?
- 주총을 하는데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이걸 저지할 수는 없나요?
- 회사 결의 사항에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소수지분이어서 결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이 경우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
- 보통주 주주들이 의결권 수가 많다고 RCPS 주주인 우리에게 불리하게 배당결의를 하려고 합니다. 가능한가요?
- 회사가 소수주주인 저의 요청을 무시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. 소수주주인 투자자가 주주총회소집을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떤가요?
- 주주총회에 위임장을 들고 갔는데 참석장이 없다고 의결권 행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, 맞는지요? 인감증명서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 경우 의결권 위임행사가 안 되는 것인가요?
- 투자를 하면서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의 종류는 무엇이고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요?
-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 수 명이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결의를 하였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?

## 제6강. 주식회사와 자금조달(자본금 변동, 사채발행)

- 주식발행 하고 투자금 다 넣었는데, 다른 주주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소송을 걸었어요. 저희 주식 발행이 무효라고 하는데요. 이를 어찌죠?
- 해외에서는 조건부지분인수약정(SAFE), 전환어음(CN)과 같이 사실상 신주인수권(WARRANT)만을 부여하는 약정을 하는데 우리도 기업에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나요?
- 투자계약서에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경우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, 증자에 반대를 할 때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요?
- 이런 CB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전환을 안 해줍니다. 전환비율이 불공정하고 주장을 합니다. 당장 전환하여 주식을 팔아야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?
-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조건을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하나요? 전환비율을 임의적으로 기재하고 다음 투자자의 투자 당시 기업가치 따라 조정되도록 할 수 있나요?
-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(WARRANT)만 분리해서 발행할 수 있나요?
- 펀드가 교환사채로 투자를 할 수 있나요? 비상장회사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가요?

## 제7강. 자본금의 감소 및 회계

-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? 투자자만 유상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?
-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감소하여 상환재원(RCPS)을 증가하게 할 수 있나요?
- 이익배당을 현물로도 할 수 있나요?
- 회사가 투자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하였습니다. 기말에 결산을 해보니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습니다.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회사가 약속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투자자인 주주가 투자계약에 배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?

#### 제8강. 합병, 분할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에 대한 이해

-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준청산잔여재산분배청구권(Deemed Liquidation Preference)을 주장하여 회수할 수 있나요?
- 요즘 FLIP이라고 해외 진출 법인들이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무엇인가요?
- 투자한 기업이 분할을 반대하였음에도 불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. 물적 분할을 하면서 100% 자회사이고 연대보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는지요?
-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매입한 후 투자자인 저희에게 주식매수 하겠다고 통지를 하여 왔습니다. 저희는 거절을 하였는데 법대로 강제매입을 하겠다고 합니다.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?
- 청산과 폐업은 어떻게 다른가요? 회사가 청산할 재원도 없다고 그냥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하죠?

#### 제9강. 회생절차와 투자자의 조치

-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인 저희는 이사회 임원임에도 이사회결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.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다룰 수는 없는가요?
- 투자계약서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.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, 주주로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- 상환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인데 채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?
- 위약벌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?
- 회생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. 사후 보완이 가능한가요?
-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었고 투자자에게 분할 상환 일정이 있었는데,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.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?
- 회생절차 중인 법인이 유상증자 방식의 M&A를 하려고 한다는데 투자자로서 동의를 하여야 하는지요?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?